

## Tax & Legal Alert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7월



##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6월 30일, 정부는 **제167/2025/ND-CP호 시행령**을 공포하여, 제08/2015/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해당 시행령은 통관 절차, 세관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2025년 7월 1일, 정부는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을 공포하여,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시행령은 수출입세법 시행을 위한 조문 및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제18/2021/ND-CP호 시행령에 의해 수정·보완된 바 있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과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은 관세법, 수출입세법, 부가가치세법을 포함한 8개 법률을 수정·보완한 **제90/2025/QH15호 법률**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제90/2025/QH15호 법률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는 [[Deloitte Vietnam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행일:

- ✓ 제182/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5항, 제6항, 제9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 제167/2025/ND-CP호 시행령의 기타 조항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효력 규정:

- ✓ 통관 절차, 세관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규정한 제08/2015/ND-CP호 시행령을 수정·보완한 제59/2018/ND-CP호 시행령은 폐지된다.

## 주요 개정 사항

본 뉴스에서는 Deloitte Vietnam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및 보완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

- ✓ 세관 분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및 적용 요건
- ✓ 수입세 면제 제도
- ✓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
-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통관 절차
- ✓ 가공 및 제조 시설에 대한 실지 검사 절차



#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계속)

## 1 세관 분야의 AEO 제도 및 적용 요건

### AEO 제도 적용 요건

일반 기업에 대한 일반 요건	과학,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
자격 요건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연간 수출입 실적 ✓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세관 및 세무 규정의 준수 여부 ✓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정 준수 ✓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 전자 통관 절차 및 전자 세금 절차 이행 ✓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 이행	자격 요건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정 준수 ✓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 전자 통관 절차 및 전자 세금 절차 이행 ✓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 이행 수출입 실적 및 2개 과세연도 연속 세관·세무 법규 준수 요건은 <b>적용되지 않는다</b> <b>추가 요건:</b> 기업은 과학기술부에서 공표한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요건

-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실제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 정보 기록의 보관
  - ✓ 이상 상황 관리 및 방지
  - ✓ 기업 내부 감독
  - ✓ 재무 건전성 통제
- 내부 통제 시스템은 수출입 물품의 공급망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 물품 보안
  - ✓ 정보기술(IT) 보안
  - ✓ 운송 보안
  - ✓ 인력 보안
  - ✓ 사업장 내 보안
  - ✓ 거래처(비즈니스 파트너) 보안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5항 d목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10조

### 기존 AEO에 대한 요건

이미 AEO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제182/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규정된 AEO 제도 적용 요건을 본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4조



##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계속)

### 2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 제90/2025/QH15호 법률 제24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이 보완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세 대상 수입 물품의 범위
- 생산 개시 또는 시험 생산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
- 면세 대상 품목의 사전 통지, 제출 서류, 면세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

제182/2025/ND-CP호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

### 3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법

국내 기업과 비관세지대(내수면세지역) 소재 기업 간 수출입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기준 및 산정 시점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 ✓ 수출 물품의 세관 신고 가액은 수출 통관장까지의 판매가격으로 산정한다 [...].
- ✓ 수입 물품의 세관 신고 가액은 최초 수입 통관장까지 실제로 지급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

#### 📌 비관세지대로의 수출 시 수출 통관장:

"물품이 비관세지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 통관장은 비관세지대와 베트남 내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지점으로 한다."

#### 📌 비관세지대로부터 내수 시장으로의 수입 시 최초 수입 통관장:

"물품이 비관세지대로부터 베트남 내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최초 수입 통관장은 비관세지대와 베트남 내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구역으로 한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8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20조



#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계속)

## 4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통관 절차

### 📌 내국 수출입 활동의 범위

- 외국 사업자가 베트남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도록 지정한, 베트남에서 가공된 물품
- 베트남 기업과 외국 사업자 간에 거래·임대·차용되는 물품으로, 외국 사업자가 베트남 기업을 물품의 인도 또는 수령 주체로 지정한 경우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통관 완료 시점

- 📌 내국 수출신고서와 내국 수입신고서가 모두 완료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내국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 및 인도·수령 활동

- 📌 물품은 통관 절차 완료 전에도 인도·수령될 수 있으며, 또는 통관 절차 완료 후 인도·수령될 수 있다.
- 물품은 통관 절차 완료 시점까지 또는 인도·수령 완료 시점까지, 인도·수령 시점부터 세관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된다.
- 인도·수령의 시점, 장소 및 방법은 외국 사업자가 지정하며, 이는 세관신고 시 또는 인도·수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관당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19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



## AEO 제도, 통관 절차 및 수입세 면제에 관한 제167/2025/ND-CP호 시행령 및 제182/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계속)

### 5 가공 및 제조 시설에 대한 실지 확인 범위

실지 확인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가공 및 생산 시설, 원자재 보관소, 기계 및 수출 제품의 주소를 포함한다;
- ✓ 허가받은 영업 활동의 범위;
- ✓ 공장, 기계 및 장비의 실체;
- ✓ 생산 라인에 참여하는 인력;
- ✓ 생산 및 가공 공정, 생산 능력 및 규모;
- ✓ 신고된 장소에서 수입 원자재, 자재 및 수출 제품의 보관 상태;
- ✓ 창고 회계장부 또는 수출입 물품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자재, 자재, 수출 제품, 기계 및 장비를 모니터링하며, 원자재, 자재, 제품, 기계 및 장비의 재고를 파악한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20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9조

### 6 사후 심사(PCA) 운영에 관한 수정 및 보완 사항:

#### 관세국에서의 사후 심사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 ✓ 본점 소재지 또는 세금 코드가 해당 지역 관세지국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입신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지국의 관리 구역 내 수입신고 건에 한해 사후 심사를 수행한다.
- ✓ 다른 지역 관세지국의 관리 구역에서 제출된 수입신고 건에 위반 징후가 발견된 경우, 적발한 부서는 관세국에 보고하고, 적절한 심사 부서를 지정받도록 한다.

#### 명확해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사후 심사 결정서는 서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입신고인에게 송부하며, 사후 심사일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송부한다. 단, 수입신고인의 본사에서 실시하는 심사는 예외로 한다.
- ✓ 사후 심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후 심사팀은 설명 및 추가 자료를 포함한 심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167/2025/ND-CP호 시행령 제1조 제54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100조



## Deloitte Vietnam의 인사이트 및 권고사항

### Deloitte Vietnam의 인사이트 및 권고사항

- ✓ 제90/2025/QH15호 법률에 따라 관세법에 추가된 규정보다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제90/2025/QH15호 법률 및 제167/2025/ND-CP호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내국 수출입 운영을 신속히 검토하고,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매수인/매도인과 함께 내국 수출입 절차의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규정 준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거래 건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관할 당국과의 협의를 시작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된다.
- ✓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 면세 수입과 관련된 규정, 지침 및 관세 절차를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검토한다;
  - 면세 제도의 적용을 위해 연구, 생산 및 시험 생산 활동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계획 및 사업 추진 일정을 수립한다;
  - 과학기술부에서 공표한 목록에 따라 반도체, 첨단 기술, 전략 기술 및 핵심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물품 수출입에 대해 AEO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 이미 AEO 제도를 부여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나, AEO 지위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보완된 AEO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 ✓ 이행 과정에서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규정 해석이나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세무/관세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인과 상담**하여 관련 지침을 확보하고, 규정 준수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Deloitte의 지원 방안

딜로이트 베트남 Customs & Global Trade Team은 세무 및 관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규정 업데이트 및 영향 평가

- ✓ 베트남 내 기업의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 및 관세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 ✓ 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최신 규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규정 준수 수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적용 가능한 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최적화를 도모한다.



### 관세 준수 검토

- ✓ 기업의 내부 관리 프로세스 및 규정 준수 관행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며, 현행 및 신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세 준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제안한다.



### 내부 통제 프로그램 지원

- ✓ 수출용 제조/가공 활동과 관련된 내부 통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검토하여, 관계 당국에 의한 감사 및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AEO 제도 및 관세 면제 제도 신청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 기업이 AEO 제도 및 수입관세 면제 제도 신청을 위해, 관세 분야에서 공표된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문 및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세무 및 법률(Tax & Legal)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딜로이트 베트남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 Contact us

##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mailto: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mailto: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1 4645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 Office

##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Lang Ward,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Sai Gon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